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3. 4. 28.
제안자 : ○○○ 위원회

1. 수정이유

개정안의 일부 자구를 조정하고,
신설되는 청남대관리사업소의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 전보권을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필요성이 있어 부칙에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2. 수정 주요골자

○ 일부 자구조정

- “주요시설” ⇒ “시설”(제49조, 제51조)
- “관광홍보·안내 및 각종 편의제공” ⇒ “관광홍보·안내”
(제51조 제3호)

○ 부칙조항(다른 조례의 개정) 신설 (제2조)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를 개정

⇒ 청남대관리사업소장에게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권을 위임.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9조 및 제51조 중 “주요시설”을 “시설”로 하고,

안 제51조 제3호 중 “관광홍보·안내 및 각종 편의제공”을
“관광홍보·안내”로 한다.

안 부칙 시행일을 제1조(시행일)로 하고, 부칙에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4항 및 제5조중 “축산위생연구소장”을 각각
“축산위생연구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으로 하고, 별표
4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제7호란
다음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련 번호	사 무 명	위임대상 기 관	근거법령
8	○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청남대관리 사업소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조문 대비 표

□ 조례명 :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	수정안
제4장 사업소	제4장 사업소
제1절 내지 제5절 (생략)	제1절 내지 제5절 (현행과 같음)
<u>제6절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u>	<u>제6절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u>
<p>제49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남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시설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이하 "청남대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청남대관리사업소는 충청북도 청원군 관내에 둔다.</p> <p>제50조(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p> <p>제51조(소관사무)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변환경 보전 및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 2. 청남대 주요시설 유지관리 3. 관광홍보·안내 및 각종 편의제공 4. 주변지역 민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p>제49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남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이하 "청남대관리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②청남대관리사업소는 충청북도 청원군 관내에 둔다.</p> <p>(개정안과 같음)</p> <p>제51조(소관사무)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掌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변환경 보전 및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 2. 청남대 시설 유지관리 3. 관광홍보·안내 4. 주변지역 민원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안	수정안								
제7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제52조 내지 제54조 (현행과 같음)	제7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제52조 내지 제54조 (개정안과 같음)								
제8절 충청북도종자보급소 제55조 내지 제57조 (현행과 같음)	제8절 충청북도종자보급소 제55조 내지 제57조 (개정안과 같음)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사무 의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4항 및 제5조중 “축산위생연구소장”을 각각 “축산위생연구소장, 청남대관리사업소장”으로 하고, 별표 4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제7호란 다음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일련 번호</th><th>시무명</th><th>위임 대상기관</th><th>근거법령</th></tr> </thead> <tbody> <tr> <td>8</td><td>내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개농지공무원의 소내 전보권</td><td>청남대관리 사업소장</td><td>시행공무원법 제6조제2항</td></tr> </tbody> </table>	일련 번호	시무명	위임 대상기관	근거법령	8	내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개농지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청남대관리 사업소장	시행공무원법 제6조제2항
일련 번호	시무명	위임 대상기관	근거법령						
8	내6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개농지공무원의 소내 전보권	청남대관리 사업소장	시행공무원법 제6조제2항						